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유의사항
안내 의무 마련 등〉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52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검역결과 처분 세부절차 위임근거 마련(안 제16조제6항)	3
2. 출입국자 등에 대한 식물검역 안내 및 교육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안 제45조의4 및 제50조제3항제1호의3 신설)	9
3. 탁송품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50조제3항제3의3) ...	2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11. 14.

다.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해외여행객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일 등 금지식물을 안내하여 사전 반입을 차단하고 검역물품은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식물검역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항·공항 등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

비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
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검역결과 처분 세부절차 위임근거 마련(안 제16조제6항)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현행법은 식물검역관이 이 법을 위반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폐기·반송·회수·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16조제6항에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반송·회수·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임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반송·회수·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등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5.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7.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현행	개정안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우편·택송·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나.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식물검역관이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반송·회수·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항-----.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16조제1항~제3항은 이 법을 위반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폐기·반송·회수·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명령서 발급, 명령 이행기간, 소독·폐기의 장소, 소독의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²⁾하고 있으나, 현행법

1) 「식물방역법」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등
2.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5.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7.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우편·택송·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나.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⑤ 식물검역관이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상 시행규칙으로의 위임근거가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개정안은 제16조제1항~제3항의 폐기·반송·회수·소독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현행법 상 위임근거 미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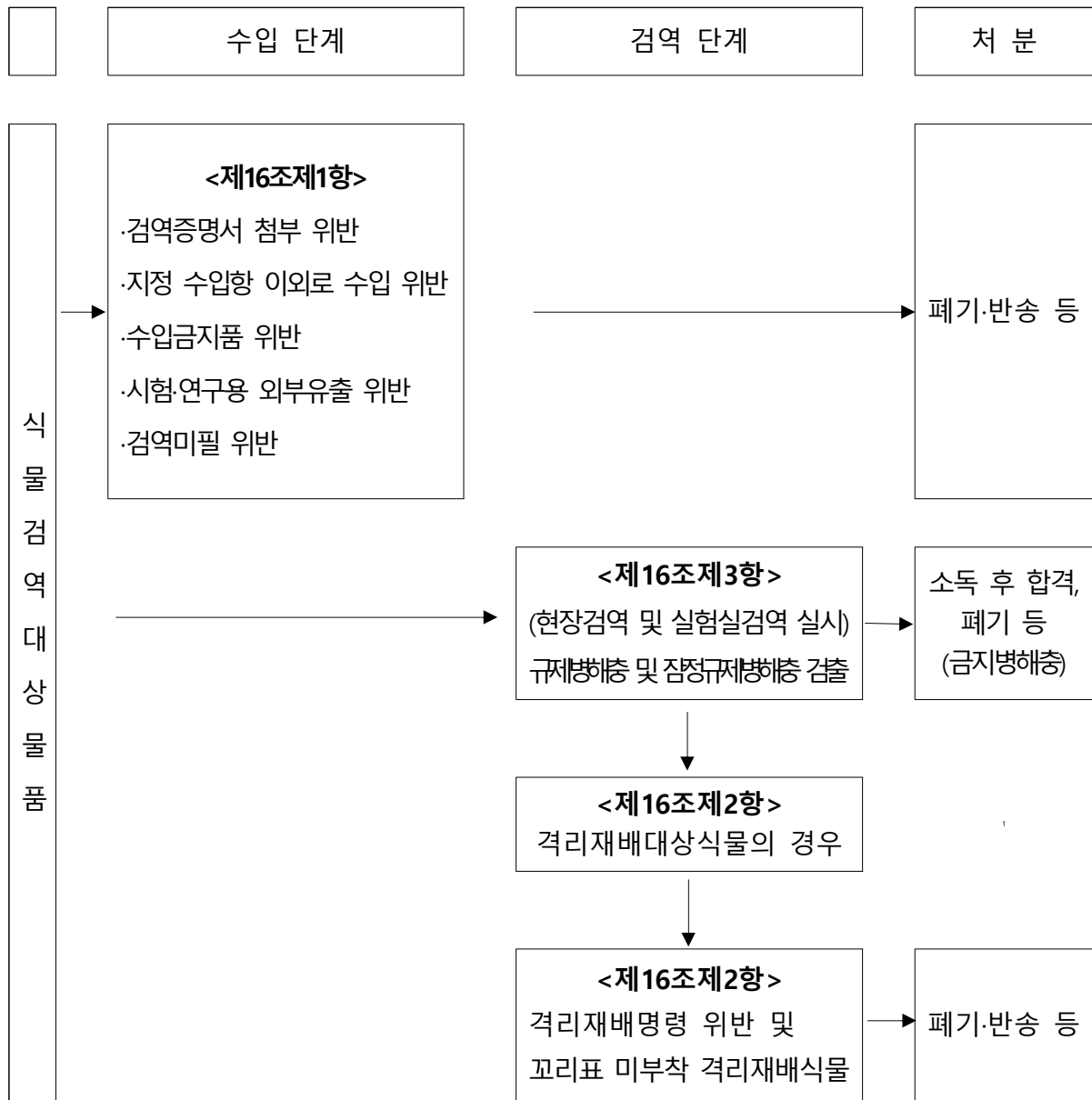
【 현행법 상 폐기·반송·소독 등 세부사항에 관한 위임근거 비교 】

구 분	현행법	위임근거
폐기·반송	제16조제1항	-
	제16조제2항	
소독·폐기	제16조제3항	
소독·폐기	제16조제4항	제16조제6항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독 및 폐기 시 비용 청구	제16조제5항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제24조(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제25조(소독·폐기의 장소), 제26조(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의 확인), 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제27조의2(소독의 방법 등)

【 현행법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관련 업무 절차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4. 12. 26.) 제출

2. 출입국자 등에 대한 식물검역 안내 및 교육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안 제45조의4 및 제50조제3항제1호3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무역항, 공항, 남북 출입장소의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선박·항공기 운송인으로 하여금 승객 등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교육)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 및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 정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u>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

현행	개정안
제5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 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설된 공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45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의2.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3.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공항만 시설 관리자, 항공사·여객선 운영자가 국제 공항만 출입국장, 항공기·선박에서 출입국자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2) 국토교통부

별도 이견 없음.

3)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별도 이견 없음.

4) 대한항공 등 10개 항공사 및 화동해운 등 7개 여객선사

별도 이견 없음.

다. 검토 의견

현행 식물검역 관련 안내 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① 안 제45조의4제1항 각 호의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의 시설 관리자, ② 안 제45조의4제2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지도³⁾’(공문 발송)의 형식으로 식물 검역 관련 안내 등을 요청하고 있음

3)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개정안 적용대상 공항, 항만 시설 개수(20개소) 】

관할	공항	항만
인천공항지역본부	1	-
영남지역본부	2	1
중부지역본부	1	2
서울지역본부	3	5(남북관리소 2개소 (도라산, 동해) 포함)
호남지역본부	1	1
제주지역본부	1	2
합 계	9	1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5. 2. 4.) 제출

【 개정안 적용 대상 선박, 항공기 운행사 개수(216개소) 】

관할	항공기 운행사	선박 운행사
인천공항지역본부	105	-
영남지역본부	29	5
중부지역본부	4	15
서울지역본부	18	5
호남지역본부	8	1
제주지역본부	23	3
합 계	187	2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5. 2. 4.) 제출

【 식물검역 안내 관련 행정지도 사례 】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수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취항 항공사 귀하
(경유)

제목 동식물 검역 홍보 협조 요청

1. 평소 동·식물 검역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유튜버가 미국에서 햄버거를 반입하는 영상이 농림축산식품부 반부패 익명 신고센터로 신고 되어 관련법에 따라 처리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내안내방송 대본에 햄버거문구를 추가하여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항공사는 기내 안내 방송시 **첨부된 안내방송대본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 방송 최소 2회이상 실시
4. 아울러, 햄, 소세지 등 육가공품이나 과일이 들어간 **기내식(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제공한 경우 국내 도착 전 반드시 회수**하여 승객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됨

불임. 기내 안내방송 대본(햄버거 추가). 끝.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주무관	전오	과학기술서기 관	장순서	휴대물검역1과 전담 2024. 5. 24.	장	송인달
협조자						
시행	휴대물검역1과-1653			접수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 http://www.qia.go.kr					
	2106호 (운서동)					
전화번호	032-740-2649	팩스번호	032-740-2689	/ yoss@korea.kr		/ 비공개(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4. 12. 26.) 제출

【 현행 동·식물 검역 관련 안내 사항 】

관세청
KOREA CUSTOMS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세대의 가족은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업과 생면밀접은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_____ 년 월 일
여권번호: _____
여행기간: _____ 일 출발국가: _____
동반가족: 본인 이 명 항공편명: _____
전화번호: _____
국내 주소: _____

세관 신고사항 해당 사항에 “☒” 표시

1 휴대품 면세범위(및면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면세 초과 있음 ☐ 없음 ☐
 ⇒ 물품 상세 내역은 뒷면에 기재
 ⇒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2 원산지 FTA 협정국기인 물품으로서 면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있음 ☐ 없음 ☐

3 미하루 환상해서 총한계가 “1만 달러”를 있음 ☐ 없음 ☐
 초과하는 화폐 등(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
 [총 금액: _____]

4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있음 ☐ 없음 ☐
 가. 총포류, 실탄, 도검류, 마약류, 방사능물질 등
 나. 위조지폐, 가짜 상품 등
 다. 음란물, 불합 찬양 물품, 부정 장비 등
 라. 멸종위기 동식물(맹우새, 도미뱀, 원숭이, 난초 등)
 또는 관련 제품(종다, 사향, 약이거죽 등)

5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있음 ☐ 없음 ☐
 가. 동물(포육기 등 수생 동물 포함)
 나.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
 다. 식물,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종자, 흙 등
 라. 가족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물이 발부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있음 ☐ 없음 ☐
 가.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품 등
 나.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다. 세관에 보관 후 출국일 때 가지고 갈 물품
 라. 한국에서 잠시 사용 후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갈 물품
 마. 열중품, 출국할 때 “일시수출(반출)신고”를 한 물품 등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_____ (서명)
 < 뒷면에 계속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기내 배부용



<동식물검역 홍보 배너> : 입출국장



<동식물 검역안내 리플릿 비치> : 입출국장



<검역안내 영상 송출> : 입출국장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4. 12. 26.) 제출

【 현행 동·식물 검역 관련 기내 안내 방송문 】

【출국 안내방송】

(한국어)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여행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해외 가축 전염병과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육류, 햄, 소시지, 육포, 햄버거 등 축산식품과 망고, 라임과 같은 생과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진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불법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여행객께서는 방문하는 국가의 가축사육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여행객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때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경우 반드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Notification to the departing travellers】

☞ This notification is from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of Korea for travellers to depart from Korea.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animal disease and plant pests into Korea, the active cooperation from traveller is urgently needed. First, all travellers into Korea are not allowed to carry animal product like fresh meat, ham, sausage, hamburger and jerky and plant product like mango, lime and fresh fruits with them. Without voluntary declaration of carrying such products, the travellers will face the penalty and shall be fined up to 10 million won. Second, the travellers shall avoid visiting livestock related areas like animal farms and market. Also, the traveller working in area of livestock industry shall avoid visiting the animal farms when travelling the infectious disease affected country and when travelling that countries, the travellers shall report the departing and arriving information to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nd shall take preventive measure like disinfection treatment of their bodies and belongs when arriving in Korea.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e notification and Please be cooperative.

(중국어)

【出境广播】

☞ 农林畜产检疫本部向各位旅客播送广播通知。为了防止海外家畜传染病和植物虫害流入韩国国内，请大家对如下事项给予积极协助。

第一，再次回到韩国的旅客禁止携带肉类、火腿、香肠、汉堡包，

牛肉脯等畜产食品和芒果、青柠等鲜果入境。如不主动申报，非法携带入境，最多处以1000万韩元罚款。

第二，海外旅客尽量不要到访问国家的畜牧农场等畜产设施访问。另外，从事畜产相关行业的旅客到访非洲猪瘟、口蹄疫、禽流感等发生家畜传染病的国家时，必须向农林畜产检疫本部申报，再次入境韩国时，必须接受消毒等必要措施。谢谢。

【입국 안내방송】

(한국어)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여행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해외 가축 전염병과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육류, 햄, 소시지, 육포, 햄버거 등 축산식품과 망고, 라임과 같은 생과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져 온 경우, 입국 전 동식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시거나, 자진폐기함에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진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불법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여행객께서는 가축사육농장 등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축사육 등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여행객께서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Notification to the arriving travellers】

☞ This notification is from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of Korea for travellers to arrive at Korea.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animal disease and plant pests into Korea, the active cooperation from traveller is urgently needed. First, all travellers into Korea are not allowed to carry animal product like fresh meat, ham, sausage, hamberger and jerky and plant product like mango, lime and fresh fruits with them. When mistakenly carrying such item with them, the travellers shall declare the fact verbally or in written forms. Please self-dispose of them into the self-disposal box. voluntary declaration of carrying such products, the travellers will face the penalty and shall be fined up to 10 million won. Second, the travellers shall avoid visiting livestock related areas like animal farms and market. Also, the traveller working in livestock industry shall report the arriving fact to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nd shall take preventive measures like disinfection treatment of their bodies and belongs when arriving in Korea.

Thank for listening to the notification and Please be cooperative.

(중국어)

【入境广播】

☞ 农林畜产检疫本部向各位旅客播送广播通知。为了防止海外家畜传染病和植物虫害流入韩国国内，请大家对如下事项给予积极协助。

第一，入境韩国的旅客禁止携带肉类、火腿、香肠、汉堡包，牛肉脯等畜产食品和芒果、青柠等鲜果入境。如在迫不得已的情况下携带，请在入境前向动植物检疫员进行申报或者在入境处自主废弃箱丢弃。如不主动申报，非法携带入境，最多处以1000万韩元罚款。

第二，海外旅客尽量不要到访畜牧农场等畜产设施。另外，从事畜牧业等畜产相关行业的旅客必须向农林畜产检疫本部申报，且必须接受消毒等必要措施。谢谢。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4. 12. 26.) 제출

이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물검역 관련 안내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 추세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식물을 공항·항만 등을 통해 들여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국내 반입 금지식물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90.4%)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단속(X-ray 검색, 검역탐지견 등)을 통해 적발되고 있으며, 자진신고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 해외여행객 입국자 현황 】

(단위 : 천명)

구 분	항공기	선박	계
2021년	674	293	967
2022년	2,879	319	3,198
2023년	10,277	755	11,032
2024년	13,374	1,725	15,09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4.관광지식정보시스템>입국관광통계)

【 해외여행객 반입 금지식물 반입 현황 】

(단위 : 건)

구 분	금지품 반입 (A=B+C)	X-ray, 탐지견 검색 (B)	자진신고 (C)	적발 비율 (B/A)	자진신고 비율 (C/A)
2021년	40,658	39,043	1,615	96.0%	4.0%
2022년	64,781	60,015	4,766	92.6%	7.4%
2023년	105,114	91,372	13,742	86.9%	13.1%
2024년	116,975	110,189	6,786	94.2%	5.8%
계	210,553	190,430	20,123	90.4%	9.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정보시스템)

이는 해외여행객 등이 식물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바,

개정안은 출입국자 등에 대한 식물검역 정보 안내 및 교육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건수를 감소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유사 입법례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과태료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 ① 제53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등을 방문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이하 “가축전염병 정보”라 한다)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탁송품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50조 제3항제3의3)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현행법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제3호의3).

현행	개정안
제5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5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u>알리지</u> 아니한 자	3의3. ----- ----- ----- ----- ----- ----- <u>지체 없이 알리지</u> -----
4. ~ 5. (생략)	4. ~ 5. (생략)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u>지체 없이</u>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탁송업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접수하면 식물검역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현행법 제12조제7항은 탁송업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⁵⁾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고⁶⁾,

5)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 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

현행법 제50조제3항제3호의3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⁷⁾.

그런데, 현행법이 식물검역 대상 탁송품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 대상 탁송품의 물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탁송업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를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 내 병해충이 포장 밖으로 확산되거나 다른 물품에 붙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는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어 탁송업자가 검역신고 없이 식물검역 대상 탁송품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제12조제7항⁸⁾)에 맞추어

려야 한다.

7) 「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8)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제50조제3항제3호의3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 측면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유사 입법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문 의 처
02)6788-5426